



### 주목할 만한 내용:

#### 개인소득세

1. 직장 변경시 부양가족을 재등록;
2. 1년동안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베트남 국민은 세무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것인가?

#### 법인세

1. 토지 임대차계약을 청산시 조세정책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7월 23일 제68700/CT-TTHT호 OL;
2. Google 및 Facebook에 홍보활동에 대한 조세정책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8월 24일 제78002/CT-TTHT호 OL;

#### 부가가치세

1. 사전에 수입신고되지 않은 상품을 베트남 항구/공항에서 재판매할 경우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외국인 계약자세

1.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외국인 계약자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규정
2. 보세창고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없이)의 외국인 계약자세;

#### 3. 무역 및 관세

1. 수출가공업체 (EPE)의 외주가공 활동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2. 정부는 2020~2022년 EVFTA 이행을 위해 베트남 수출입 우대 관세율에 대한 시행령 발행;

01

조관세리

02

개인소득세

03

법인소득세

04

부가가치세

05

외국인 계약자세

06

무역 및 관세

## 조관세리



### 주목할 만한 내용

#### 첫 8개월 세금 징수현황 및 주목할 만한 사항:

##### 첫 8개월의 현황

총 징수액은 VND 752,615 billion 이며, 2020년 계획 대비 60%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91,9%에 해당한다.

##### 세무 조사/감사 현황

2020년에 첫8개월에 모든급의 조세당국은 납세자의 현장에서 세무 감사/ 조사의 41,248케이스 또한 조세당국 본사에서 감사 (desk-tax audit) 를 357,323의 케이스를 진행해 왔다. 세무 감사/ 조사를 통한 세금부과액은 VND 34,691.5 billion이며 2019년 동기 대비 121.2%에 해당한다, 그중에:

- 세금 징수 증가: VND 12,051 billion를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154.3%에 해당함;
- 손실 감소: VND 21,665 billion 를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110.5%에 해당함;
- 국가예산에 납부된 총 징수액: VND 5,918.1 billion를 달성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117.6%에 해당함.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 지침 문서

#### 직장 변경시 부양가족을 재등록

납세자가 직장을 변경할 경우 첫번째로 등록한 것처럼 부양가족을 재등록해야 한다.

*(2019년 개인소득세 ("PIT")를 정산을 안내하는 세무총국의 2020년 8월 25일 제3487/TCT-DNNCN 호 OL)*

#### 근로자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은 개인소득세 부과된 대상인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비누적적 보험을 혜택으로 지원해줄 경우 보험회사가 베트남에서 운영한 자격이 있으면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 대한 PIT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8월21일자 제77564/CT-TTHT호 OL)*

#### 투자기금으로 인한 배당금이 PIT 5% 부과

개인 투자자는 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된 증권투자기금 혹은 기타 투자기금으로 부터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 자본투자 소득에 대해 PIT 5%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기관은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따라 PIT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

*(투자기금으로 부터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정책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8월19일 제76732/CT-TTHT호 OL)*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저소득 공약서 및 PIT 정산을 위한 위임서의 양식을 자체 작성할 수 있는가?

회사가 내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PIT 정산을 위한 위임서 및 저소득 공약서를 작성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재무부의 2015년6월15일 제92/2015/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2/CK-TNCN호 양식 및 제92/2015/TT-BTC호 양식에 따른 기준내용을 결과서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서류의 신뢰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서류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PIT 양식에 관한 세무총국의 2020년8월17일자 제3363/TCT-DNNCN호 OL)*

#### 1년동안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베트남 국민은 세무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것인가?

2019년에는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에서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으나, 일본에서 183일 이상으로 체류하면서 일본 조세당국으로 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부여 받으므로 베트남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은 2019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정세율 (20%)로 PI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세무상 거주 상태에 관한 세무총국의 2020년8월11일 제 3276/TCT-DNNCN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소득세



### 지침 문서

#### 국회의 2020년6월19일 제116/2020/QH14호 결의 수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초안

초안에 따르면 결의에 따른 세금감면 대상인 2020년 총매출액은 업체의 2020년에 상품 판매, 용역제공으로 인해 장출되는 총매출로 정의된다.

신규 법인의 첫해로 2020년 과세연도에 12개월 운영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총매출액은 2020년 과세연도에 업체의 실제적인 총매출액을 실제 운영된 개월수로 고쳐서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법인이 한달안에 신설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전체달1개 단위로 계산한다.

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이 VND 16.67 billion에 미만인 경우 분기별 세금 납부시 납부 해야 할 세액의 30%를 공제한후 임시적으로 납부한다.

법인세 과세기간이 재정연도에 따라 결정되거나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으로 적용한 업체의 경우 시행령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산정된다.

#### 창고 수리.개신 비용 및 창고 임대 비용에 대한 조세정책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7월 16일 제66300/CT-TTHT호 OL

업체가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창고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자산의 수리를 책임지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대 고정자산 수리.개신에 대한 비용을 공제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재무부의 2015년 06월 22일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3년 미만의 기간으로 비용에 배분할 수 있다.

####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해지시 조세정책에 관한 하노이 세무당국의 2020년 7월 23일 제68700/CT-TTHT호 OL

업체가 다른 단체 또는 개인 ("임차인")과 토지 사용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정하는 만료기간보다 일찍 해지하자고 할 경우 계약을 청산시 임차인은 실제 임대기간을 뺀 후 업체로부터 잔액을 돌려받는다.

계약을 청산할 때 임차인이 아무 소득을 못 받고 임대토지가 청산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토지에 기반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청산은 토지에 첨부된 자산 이전과 관련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계약 청산은 부동산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건설한 기반시설) 이전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 이전과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

#### Google 및 Facebook에 홍보활동에 대한 조세정책에 관한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08월 24일 제78002/CT-TTHT호 OL

업체는 Facebook 및 Google에 홍보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업체의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정조건을 충족하고 규정에 따라 외국계약자세 ("FCWT")의 신고.납부에 대한 지원서류 및 부가가치세 ("VAT") 법에 따라 비현금 결제증비서류에 의해 지원되면 CIT산출목적상 공제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업체는 직원에게 이러한 홍보 비용을 개인 신용 카드로 지출한 것을 위임한 후,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 (은행에서 업체가 직원에게 개설해준 신용카드) 로 이체를 통해 직원에게 돌려줄 경우 이지급방식이 업체의 재무정책 혹은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으면 비현금 지급 증빙서류로 간주될 수 있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부가가치세



### 지침 문서

####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SCT") 납부 기한 연장을 안내하는 제109/2020/ND-CP호 시행령

시행령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SCT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 2020년 3월 : 2020년 9월 20일까지
- 2020년 4월 : 2020년 10월 20일까지
- 2020년 5월 : 2020년 11월 20일까지
- 2020년 6월, 7월, 8월, 9월 및 10월 : 2020년 12월 20일까지.

연장 조건을 충족한 납제자가 SCT 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하기 위해 2020년9월30일까지 본 시행령에 첨부된 양식으로 연장 신청서를 직접 관리 세무국에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SCT 납부 기한 연장은 최초 세금신고 및 수정신고에 모두 적용된다.

SCT 납부 기한 연장은 자동차 제조 및 조립 활동에 종사하고 SCT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지점, 중속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제109/2020/ND-CP호 시행령은 2020년09월15일부터 발효한다.)*

#### 사전에 수입신고되지 않은 상품을 베트남 항구/공항에서 재판매할 경우 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베트남 업체는 베트남 항구/공항에서 납품 조건으로 외국 공급 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베트남으로 수입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베트남 항구/공항에서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할 경우 이러한 재판매 거래는 VAT 세율 0%를 적용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 재판매하는 베트남업체가 VAT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08월14일 제3330/TCT-CS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 계약자세



### 지침 문서

####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외국인 계약자세 (“FCWT”)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규정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 회계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투자자는 FCWT를 원천징수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프로젝트가 소재하는 지역의 현지 세무국에 세금 신고,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세무총국의 2020년07월29일 제3026/TCT-KK호 OL)

#### 중개 수수료 소득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상품을 판매를 위해 외국인 계약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FCWT 과세는 다음과 같다:

- 상품이 베트남 내에서 소비된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FCWT이 부과될 대상이다. 베트남 회사는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상품이 베트남 밖에서 소비된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FCWT이 부과될 대상이 아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년09월01일 제20512/CT-TTHT호 OL)

#### 보세창고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서비스 미포함) 의 외국인 계약자세;

해외 업체는 보세 창고에서 납품한 방식으로 (서비스 미포함) 베트남 업체에 상품을 제공할 경우 해외 업체가 얻은 소득에 CIT 1% 세율로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 업체는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년 9월 1일 제20511 / CT-TTHT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수출가공업체 (EPE)의 외주가공 활동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 i. EPE 업체는 다른 EPE업체에 외주가공을 수행 할 경우

- 수출입 관세: EPE업체가 다른 EPE업체에 외주가공을 위탁할 경우 그 다른 EPE업체로 외주가공을 위한 발송된 물품은 수출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다.
- 외주가공 수수료에 대한 VAT: EPE들 간의 외주가공 수수료는 VAT부과할 대상이 아니다.

##### ii. EPE업체는 국내업체에 외주가공을 수행할 경우

- 국내업체 :
  - 수입세: EPE 업체는 국내업체에 외주가공을 수행할 경우 EPE업체로 부터 외주가공을 가공품을 납품 받을 때 국내업체가 수입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업체가 외주가공 계약에 따라 EPE업체로 부터 받은 원자재의 가격은 가공품의 관세가치에 포함되지 않다.
  - VAT 관련: 국내업체는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VAT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 EPE 업체과 관련하여 :

- 국내업체에 제공한 EPE업체의 외주가공 서비스에 대한 VAT: 정부의 2018년05월22일 제82/2015/ND-CP호 시행령 제30조 7항 규정을 참조하여 EPE업체의 가공활동은 베트남에 상품매매 활동 및 상품매매에 직접관련 활동에 해당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법령에 따라 VAT정책을 적용하도록 한다.
- EPE업체의 외주가공 활동이 베트남에 상품매매 활동 및 상품매매에 직접관련 활동에 해당된 경우 EPE업체는 해당 가공활동을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VAT 10% 세율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0년08월21일 제5589/TCHQ-TXNK호 OL)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 지침 문서

#### EPE 업체에 외주가공을 위탁된 상품에 대한 수출입세

관세총국에 따르면 국내업체가 외국상인과 외주가공 계약을 체결한 후 비관세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가공할 경우 (하도급 가공)에 가공품에 대한 수출입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비관세 지역에 소재하는 가공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업체로 부터 모든 원자재 및 부품을 매입함) 가공품이 국내시장으로 수입될 때 수입세가 면제된다.
- 비관세 지역에 소재하는 가공업체는 해외에서 수입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할 경우 국내시장으로 가공품이 수입될 때 수입세가 부과된다.

(관세총국의 2020년9월4일 제5864/TCHQ-TXNK호 OL)

#### 정부는 2020~2022년 EVFTA 이행을 위해 베트남 수출입 우대 관세율에 대한 시행령을 발행;

2020년09월18일 정부는 2020년- 2022년 기간에 EVFTA협정에 따라 시장개방 약속의 수행을 위해 베트남의 특별우대 수출입관세에 대한 제111/ND-CP호 시행령을 공표했다.

2020년08월01일부터 본 시행령이 발효할 일자까지 등록된 상품 수출입 관세신고의 경우 본 시행령에 베트남의 특별우대 수출입 관세율을 적용조건을 충족하며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으면 관세당국은 조세관리법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액을 처리하도록 한다.

본 시행령은 2020년08월0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베트남에서 영국 및 북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재화 또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재화에도 적용된다.

(정부의 2020년09월18일 제111/ND-CP호 시행령)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